

2016년도 일반감사 결과

I. 감사개요

1. 감사목적

2016년도 종합감사계획에 따라 일반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오류 및 불합리한 제도·관행을 시정·개선함으로써 공사 경영목표 달성 적극 지원

2. 감사대상 : 안전정책본부 소관

3. 감사범위 : 2015.3월 ~ 2016.9월까지 수행업무 전반

4. 감사기간 및 인원

가. 감사기간 : 2016. 10. 4. ~ 10. 21.(14일간)

나. 감사인원 : 감사실장 외 4명

5. 감사중점사항

가. 업무 수행시 법령·사규의 준수 여부

나. 안전교육, 훈련 등 안전관리업무 추진실태

다. 업무 수행에 따른 고비용·저효율 업무 유무

라. 고객서비스 및 열차안전운행 지장요소 유무 등

II. 감사결과

1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: 건)

행정상 조치					신분상 조치				비고
계	개선	주의	통보	현지시정	계	징계	경고	주의	
10	5	2	2	1	-	-	-	-	

2. 지적사항 세부내역

연월일 번호	내 용	조 치 사 항	처분사항	
			행정 조치	신분 조치
1	<p>■ 기간제근로자 포함 무재해운동 추진 활성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간제근로자 직접고용 전환후 부서별 무재해운동 추진현황을 보면 ○○○○처는 2015년 11월 12일(무재해 2배 개시일), □□□□처는 2016년 4월 14일(무재해 10배 개시일)부터 각각 기간제근로자를 무재해운동에 포함하였고, △△△처는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시키지 않은채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, ◎◎◎처는 무재해운동을 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일관성이 없음 - 이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5조(추진부서)에 기간제근로자 전환으로 현업직원이 포함된 ◎◎◎처를 무재해운동 추진부서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, - 총괄부서인 ●●●●팀에서는 반기별 '무재해운동 달성보고서'를 부서별로 제출받고 있어 기간제근로자 포함여부 등 무재해 운동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부서별 상이한 무재해 운동추진에 대하여 점검 및 조정하지 않음 	기간제근로자 운영부서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55조(추진부서)를 개정, 기간제근로자 포함 무재해운동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지침을 마련 시행	개선	
2	<p>■ 영업배상보험처리 사항에 대한 관리절차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철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처리를 위하여 '영조물배상공제'에 가입 	영조물배상공제의 공사 배상 책임 보험처리 사항에 대하여 시설 및 시설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마련	개선	

연번	내 용	조 치 사 항	처분사항	
			행정 조치	신분 조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의 배상책임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살펴본 결과 해당부서 개별적으로 조치는 하였으나 배상책임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총괄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- 공사 배상책임여부의 판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보험처리 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함으로써 사고의 재발방지 및 재정 손실의 최소화를 기할것이 요구됨 			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외부기관 비상통신망 자체점검기준 마련 - 사내직통전화에 대해서는 주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기관과의 직통전화는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, 군부대에서 매일 통화점검을 하는 직통전화도 통화자, 통화시간 등을 관리함이 없이 전화를 받는 것으로 유지 - 직통전화는 긴급상황 발생시 군부대, 경찰서 등 외부기관과의 신속한 연락으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치된 것으로서 평상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, 이를 위하여 적절한 자체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이 요구됨 	<p>긴급상황 발생시 적기대응 할 수 있도록 군부대 등 외부기관 비상통신망(직통전화)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점검 기준을 마련</p>	개선	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사 기념품 활용관련 세부기준 마련 - 기념품은 홍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급목적에 맞는 대상에게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, 수입·불출사항 	<p>공사 홍보기념품에 대한 제공대상, 제공범위 등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기념품 구매 및 지급관리에 철저</p>	개선	

연번	내 용	조 치 사 항	처분사항	
			행정 조치	신분 조치
	<p>을 투명하게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보목적의 기념품이 적절한 기준이 없이 관리됨에 따라 홍보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, 이는 예산 낭비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념품의 제공대상, 제공범위 등에 대한 적절한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하여 기념품 구매 및 지급 관리의 철저를 기할것이 요구됨 			
5	<p>■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산정기준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○○○팀은 2015년 12월 ‘◇◇시스템 유지보수 용역’ 발주시 대가를 산정하면서 평가점수를 분야별로 4~5등급으로 판정하여 유지관리 효율을 6~7%로 산정하였으며, 2016년 2월 발주한 ‘□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’에서는 평가점수를 5등급으로 판정하여 유지관리 효율을 11.3%로 산정하는 등 평가등급이 유사함에도 유지보수 효율을 4~5%이상 달리하여 산정 - 유지보수 용역의 난이도,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‘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, 담당자별 등급 효율산정이 4~5%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유지보수 용역비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	<p>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의 등급별 효율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</p>	개선	

연번	내 용	조 치 사 항	처분사항	
			행정 조치	신분 조치
6	<p>■ 사무위임 전결규정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무위임전결내규 [별표1] ‘사무위임 전결 사항’에서는 각종 단위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며, - 예산의 시행 품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·구매·수리시 부서장의 전결로 시행품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- ○○팀에서는 2015년 ‘△△물품구매’외 5건, 2016년 ‘●●구매’외 5건 등 총 12건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건당 500만원 이상의 예산사용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시행품의를 득하지 않고 팀장의 전결로 발주하는 등 사무위임전결사항을 위반 	향후 재발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철저 요구	주의	
7	<p>■ 용역 기성검사업무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(검사)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완료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, 검사 시행시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6조(감독과 검사직무의 경직)에 따라 감독이 검사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 - ○○팀에서는 「□□□□용역 등 3건」의 용역 준공시, ■■팀에서는 2016년도 「○○○○용역」의 전회 기성시, △△팀 	용역의 과업이 적정수행 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기성검사업무 철저요구	주의	

연월 연번	내 용	조 치 사 항	처분사항	
			행정 조치	신분 조치
	에서는 「◆◆◆◆용역」의 제3회 및 제4회 기성시, ◇◇팀에서는 2015년도 「○○용역」의 제3회, 제6회, 제9회 기성 및 준공시 감독이 기성검사를 검직하여 실시하는 등 각각 용역 기성검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실시			
8	<p>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정기적 점검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복무포털시스템을 통한 복무기록관리 여부(근태처리, 면담일지 작성 등)에 대하여 온라인상 점검만 실시하고 있을 뿐, 현장실사를 통한 각 운영부서별 관리 실태, 사회복무요원의 복장·용모·직무수행 실태 등 복무관리 점검은 미 실시 -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복무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.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은 도시철도 이용승객의 민원 및 공사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- 병무청에서 복무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·수시 실태조사 및 실적평가 결과 미흡시 배정인원 제한, 복무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, 사회복무요원의 지속적 배정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 요구 	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	통보	

연도 연월	내 용	조 치 사 항	처분사항	
			행정 조치	신분 조치
9	<p>■ 이상현상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상현상 전산관리시스템은 운전관제사가 인지한 철도사고, 운행장애 및 철도 재난사항과 이에 속하지 않는 철도 시설물의 고장이나 10분 미만의 열차지연을 초래한 현상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, 이러한 입력자료는 당초 구축계획에 따라 운행장애 예방 T/F팀 회의안건, 각 분야별 직무교육 자료 및 분야별 대책 수립, 통계보고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. - 그런데 2015년 12월 구축 이후 계획되었던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배부, 담당자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활용실적이 전혀 없었으며, 당초 구축 목적과 달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 - 이상현상 전산관리시스템은 열차운행과 관련된 이상현상 원인의 체계적인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장기간에 걸쳐 개발·구축한 시스템으로서, 그 목적에 맞게 적정 활용하여 안전사고 미연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필요 	이상현상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,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	통보	
10	<p>■ 부적합 판정 화생방방독면 회수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5년도 성능검사 결과 2002년 생산품 및 2004년~2009년까지 생산한 모든 제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폐기하라는 	향후 화생방물자 관리기준에 따라 방독면 관리 철저요구	현지 시정	

연월일	내 용	조 치 사 항	처분사항	
			행정 조치	신분 조치
	<p>「화생방 장비물자 관리기준」이 국민안전처로부터 통보되었으며, 이에 따라 2005년도 생산품 54개는 전량 폐기처리 해야 하였음에도 각 부서에 비치된 상태로 방치중</p> <p>- 이와관련 부적합 화생방방독면에 대하여 즉시 회수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, ○○○팀에서는 방독면 폐기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기간내 2005년 생산 화생방방독면 54개를 각부서로부터 회수조치</p>			